# 기술이관계약서

본 계약은 청송시스템(주)대표사원 배장호<이하 "갑"이라칭한다>가 한국베리안(주) <이하 "을" 이라 칭한다> 에서 근무 기간중 습득한 기술, Know — How 및 일부 연구개발 중이던 반도체 국산화장비<Dry Etcher System>의 Item으로 신규 회사를 설립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기술이관계약을 체결한다.

----- OF

래 -----

#### 제 1 조 기술이관 목적물

한국베리안(주)에서 개발중이던 Dry Etcher System 과 Local System 의 Business 일체에 대한 기술(기술자료,제작도면,운용Software등 일체), Know-how 와 그에 대한 영업권

제 2 조 기술료에 대한 계약금액

미화 육십칠만일천불<\$671,000.00>

#### 제 3 조 기술료지급

- 1 )기술료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지급하기로 한다.
- \* 1차년도 지급금액: \$230,000.00(VAT별도)
- \* 2차년도 지급금액: \$441,000.00(VAT별도)
- 2 )기술료의 지급시기는 다음과 같다.
  - \* 1차년도분의 지급기일은 97년12월31일이전까지로 한다.
  - \* 2차년도분의 지급기일은 98년01월31일까지로 한다.
- 3 )기술료의 원화지급시 적용환율은 지급일의 전신환매입율<TTB>로 한다.

# 제 4 조 Warranty 기간중에 있는 Local System관련 책임

"을"의 사업장에서 기납품된 Local System에 대하여 Warranty기간중에 속해있는 장비에 대한 하자보수의 책임과 Pending Issue 에 대한 해결책임은 "을"에게 있으며 "을"이 "갑"에게 하자보수에 관한 지원요청을 하는 때에는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수행 할수 있다.

#### 제 5 조 손해배상청구 금지

"을"은 "갑"에게 동 기술료를 청구함에 있어 차후 어떠한 방법으로도 제1조의 목적물과 관련하여 별도의 비용을 요구할 수 없으며 기타의 손해배상도 청구할수 없다.





# 제 6 조 책임의무사항

"을"은 "갑"에게 상기의 기술이관을 함에 있어 그동안 축적된 Local Business 에 대한 기술,Know-how 및 Dry Etcher System 에대한 연구개발자료를 제3자에게 어떠한 방법 으로도 이관할수 없으며 동 계약과 관련한 Dry Etcher System 의 연구개발참여 업체인 "삼성전자"와의 제반사항은 "갑"에게 자동 이관되는 것으로 한다.

# 제 7 조 기 타

- 1. 만일 본 계약과 관련되어 소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"갑"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.
- 2. 본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'갑'과 "을"의 상호 협조하에 일반 상관례에 의거하여 처리하기로 한다.

상기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날인한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1997년 04월 일

갑: 경기도 평택시 모곡동 4 3 8 청 송 시 스 템 주 식 회

을: 경기도 평택시 모곡동433 - 한 국 베 리 안 주 식 회 사